##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규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96 발의연월일: 2021. 1. 29.

발 의 자:이규민·김경만·김승원

김주영 · 신영대 · 신정훈

윤준병 • 이동주 • 이성만

이장섭 · 이학영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과 유사한 조문을 가진 「상표법」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에는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.

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(대법원 2004. 3. 25, 선고 2002다9011 판결) 도 현행법 상에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선의의 선사용자 역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.

그러나 선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후사용자의 주지성의 획득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선사용자가 그동안 일궈 놓은 표지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당하고, 심지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생기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라 볼 수 없음. 이에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,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은 선사용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한편,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8 신설). 법률 제 호

##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8(선사용에 따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) 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상표, 상품의 용기·포장, 그 밖에 타인의 영업이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(標識)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부 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그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 부터 계속하여 사용한 자(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"선사용자"라 한다)는 해당 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 ② 제1항의 타인은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신설>	제14조의8(선사용에 따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) 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 호, 상표, 상품의 용기·포장, 그
	밖에 타인의 영업이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(標識)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것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그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
	계속하여 사용한 자(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"선사용자"라 한다)는 해당 표 지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
	② 제1항의 타인은 선사용자에   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   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   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 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